

연구실 안전환경관리 규정 시행세칙

□ 제정 : 2017. 03. 01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연구실안전환경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점검) ①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별지서식(연구실안전환경점검표)에 따른 연구실안전 자체 점검을 년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안전환경점검표는 각 연구실의 특성에 맞게 별도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작성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결과, 안전관리실태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연구실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책임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시정요구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개선이 미흡한 경우 환경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구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일상점검 :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육안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개발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매일 1회 실시 한다.

2. 정기점검 :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실시 한다.

3. 정밀안전진단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구실은 2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연구개발활동에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나. 연구개발활동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

다. 연구개발활동에 미래창조과학부령이 정하는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

4. 특별안전점검 : 폭발사고·화재사고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연구실안전수칙)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구실안전환경점검표를 참고하여 연구실의 특성에 맞게 연구안전수칙을 마련하며 연구실책임자는 각 연구실에 이를 부착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사고경위서) 연구실사고 발생 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게 제출하는 별지서식(사고경위

서)에는 사고관련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피해내용, 사후처리, 연구실책임자의 확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비상시 행동요령) ①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사고 발생 시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별지서식(비상시행동요령)을 출입구 또는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비상시 행동요령에는 연구실책임자와 연구활동종사자, 인근 소방서 및 보건진료소, 병원 응급실의 전화번호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③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고 위험이 감지되었을 경우 즉시 비상시 행동요령에 의거 사고수습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교육) ① 규정 제14조 소정의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할 대상자 중 학생 및 연구원은 의무교육대상자로, 교직원 은 희망교육 대상자로 구분한다.

②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의무교육대상자 중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안전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연구실책임자는 의무교육대상자, 희망 교육대상자및 안전교육이 면제된 의무교육대상자 명단을 별지서식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평가시험 성적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에게 별지서식의 안전교육 수료증을 교부한다.

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안전교육 미 수료자에게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이 중 특별시험 성적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에 한해 임시 수료증을 발급하여 실험실 출입제한을 원칙적으로 차기 교육 시까지 1회에 한하여 유예할 수 있다.

⑥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법률 시행규칙 제9조1항 별표2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⑦ 안전교육을 이수한 연구활동종사자는 안전교육 수료증을 연구실 출입문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가입) 규정 제24조에 따른 보험의 종류는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하고, 보상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최대 1억원
2. 부상의 경우에는 1인당 최대 1천만원

제8조(건강검진) ① 규정 제2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유해물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는 일반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기관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1년에 1회 이상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실시한다.

1. 문진과 진찰
2. 혈압, 혈액 및 요(尿) 검사
3. 신장, 체중, 시력 및 청력 측정
4. 흉부방사선 촬영

③ 연구활동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진, 검사 또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2.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 제1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④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검사항목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7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시행세칙 제정으로 종전의 환경안전관리 규정 시행세칙은 폐기 된 것으로 본다.